

【 9 】 양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3. 14.

제출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체취료등과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가. 점용료등의 징수기준을 정하고,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정함(안 제2조)
- 나. 점용료의 감면과 소하천을 2개년도 이상 점·사용할 때 당해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등의 조정기준을 정함(안제3조, 제4조)
- 다.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허가를 한 연도분은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토록 함(안 제5조)

## 양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과 허가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라 다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의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별표2의 제8호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4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양주  
군수입충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 및 허가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 에는 제외한다)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	<p>가. 경작을 목적으로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가격의 0.8/100</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 8. 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모래·자갈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 금을 가산한다.</p> <p>라.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2.5/100</p> <p>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5/100</p> <p>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5/100</p>

구 분	산 정 기 준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 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인용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	가.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나.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m <sup>3</sup> ~ 0.5m <sup>3</sup> /sec까지 연액 10,000 원 0.5m <sup>3</sup> /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	○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가목의 1/3  ※ 월 10,000m <sup>3</sup>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 월 10,000m <sup>3</sup>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가. 군수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대한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 포함) 및 한국콜재협회 등 2개 기관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할 수 있다.

구 분	산 정 기 준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포함)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5/100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 비 고

- 내무부기준의 범위안에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 점용면적이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m'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2]

##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표 (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용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 %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100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 %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0 %
5.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 %
6. 농업용 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 %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 %
8. 기타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비율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50퍼센트로 한다.

[별표3]

## 점용료 등 조정 산식(제4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증가율-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증가율-20/100) ×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증가율-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증가율-100/100)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증가율-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0.25]

[별표4]

## 허가 수수료의 기준 (제8조 관련)

사 항 별	수수료 액
1.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성토 등 토지의 형상변경 허가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2.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첨용료의 1/1,000
3. 기타 소하천의 짐용	첨용료의 1/1,000
4.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 이 받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가	없음